

해외건설협회 - 한국산업인력공단

업무협력 약정

Memorandum of Understanding



2010. 6. 30



해외건설협회
International Contractors Association of Korea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3. 협약 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협약 당사자의 종료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본 약정은 매 1년간 자동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 4 조 (변경 및 해지)

1. 본 약정의 중요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협약기간 중 불가피한 사유로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뒤 동의를 구할 수 있다.

3. 협약기간 중 상대방에게 명예와 위신을 심히 손상시킨 경우에는 통보하고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5 조 (불가항력)

"협회"와 "공단"은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시민봉기 및 기타 비합리적인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6 조 (일반사항)

1. "협회"와 "공단"은 성실하게 상호 기관의 이미지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2. 본 약정의 각 조항에 해석에 관하여 상호간의 이의가 있거나 또는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고, 일반적인 관행에 따른다.

3. 본 약정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회"와 "공단"은 약정서 2부를 작성,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 7 조 (비밀준수 의무 등)

각 당사자는 지적재산권, 영업 비밀 등을 포함하여 본 협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0년 6월 30일



이재균

해외건설협회
회장 이재균

유재섭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유재섭